

공고 제 1 호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5월 10일

장안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윤 *영	윤 *영 1973-09-25	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밤밭일원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4-11